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3350
----------	------

2025년 12월 1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5년 10월 18일

다. 회부일 : 2025년 10월 23일

라. 상정일 : 제333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5년 12월 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건물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현황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서린동, 영풍문고 옆)
- 면적: 대지면적 $1,070m^2$, 연면적 $11,752m^2$
- 목적: 국제기구 활동 지원
- 규모: 지하 4층, 지상 15층
- 재산관리관: 외국인이민담당관(건물), 주차계획과(토지)

나. (서울투자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 현황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서울글로벌센터빌딩 6·7층)
- 면적: 토지 $90.34m^2$, 건물 $991.59m^2$
- 목적: (재)서울투자진흥재단(市출연기관) 비영리 목적사업 수행(사무공간)
- 당사자: <허가부서> 외국인이민담당관 / <수허가자> (재)서울투자진흥재단
- 허가기간: 2025. 10월 ~ 2030. 9월(5년)
- 무상사용기간: 2026. 1월 ~ 2030. 9월(4년 9개월)

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 출연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호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 요건에 해당됨
-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국제기구” 중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재단의 공공성 및 정책적 필요성 고려시, 사용료 감면 타당

※ '2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 의견을 득함.

○ 심의일: '25. 9. 25.(목)

○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재산관리과, '25.10.1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출자·출연기관 등이 비영리사업을 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기 바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동의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서울시 공유재산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건물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라 서울시 출연 기관인 (재)서울투자진흥재단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나. 공유재산 및 사용현황(서울글로벌센터 빌딩)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¹⁾에 따라 국제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종로구 종로38(서린동 63번지)에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지하4층, 지상 15층, 연면적 11,752m²)을 운영 중이며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외국인이민담당관과 주차계획과로 각각 구분되어 있음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

- '13. 4.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신축
- '14.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15. 1. 기획조정실 경영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 '21. 8.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관
- '22. 9.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 '23. 7.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국제협력과
- '24. 1.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 '24. 7.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1)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제17조(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국제기구 지원시설"이라 한다)로서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등을 운영한다.

- 서울시는 빌딩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²⁾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간 업무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 까지 5년간 관리·운영³⁾하고 있음(‘25년 사업비 34억 67백만 원)
- 현재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은 각종 국제기구 지원기관 총 19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시 경제실 금융투자과 수탁기관인 (재)서울투자진흥재단(구, 인베스트 서울)이 6층에 약 590m²의 사용면적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음(붙임1)
-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관리관인 외국인이민담당관은 2025년 8월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에 대비하여 금융투자과가 신청한⁴⁾ 서울글로벌센터 사용을 허가⁵⁾했고 금융투자과에서 무상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을 제출⁶⁾했으며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인베스트서울’이 사용 중인 6층과 재단 설립에 따라 7층 공실부분에 대한 (재)서울투자진흥재단의 사용료 감면계획⁷⁾을 수립했으며 공유재산심의 결과 시의회 동의를 조건으로 ‘조건부 적정’ 통보⁸⁾ 받음

2)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3) 글로벌센터 빌딩 관리·운영 대행사업 개요

○ 대행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 민간위탁 혁신계획(市 조직담당관-8252호, '16. 6. 30.)
- 대행사업 전환추진계획(市 해외도시협력담당관-8825호, '16. 10. 12)

○ 대행 사무 :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전반

- 대행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 인력구성 : 일반직 26명, 촉탁계약직 7명
- 사업비 : 3,467,163천원 (2025년 예산안)

4) 금융투자과-6391호(2025.8.5.),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서울글로벌센터 사용 허가 요청(수정)”

5) 외국인이민담당관-3437호(2025.8.7.), “(회신) 서울투자진흥재단 서울글로벌센터 사용 허가 요청”

6) 금융투자과-7165호(2025.9.1.), “202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 안건제출”

7) 외국인이민담당관-8179호(2025.9.3.), “서울투자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계획”

8) 재산관리과-12561호(2025.10.10.), “202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공유재산 심의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감면 개요 >

○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 목적 및 용도 : (재)서울투자진흥재단(市출연기관) 비영리 목적사업 수행(사무공간)
- 위치 : 종로구 서린동 63
- 사용 면적 : <토지> 90.3m², <건물> 991.6m²
- 당사자 : <허가부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수허가자> (재)서울투자진흥재단
- 허가 기간 : '25.10. ~ '30.09. [5년]
※ 7층 : 사무실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후, '26년 초 공사 예정
- 무상사용기간 : '26.01. ~ '30.09. [4년 9개월]
- 기준가격 : <토지> 5,233,161천원 [m²당 공시지가 57,930천원 × 면적 90.3m²]
<건물> 1,108,629천원 [m²당 시가표준액 1,189천원 × 면적 991.6m²]
- 감면액 : 317,089천원/1차년도 [토지·건물 기준가격 × 요율(50/1000)]
- 감면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 (재)서울투자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액 >

□ 공유재산심의사항 및 감면내역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구 분		내 역			
		심의사항	대상	수량	면적(m ²)	기준가격(천원)	감면액 (천원/1차년도)
48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시설 운영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등	사용료 (신규)	토지	1	90.3	5,233,161	261,658
			건물	1	991.6	1,108,629	55,431

-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인 (재)서울투자진흥재단은 2020년 1월 서울경제진흥원 산하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인베스트서울센터로 개편하여 외국 자본과 기업 유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2024년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계획9)을 수립하고 2025년 5월 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이후 지난 11월 13일 공식적으로 재단이 출범되었음

9)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계획(금융투자과-3437호(2024.10.24.), 서울시장 방침)

< 투자전담기관 조성 단계와 기능 >

단 계	기 능	운영기간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기관 기능	2020.1월~ 2022.2월
인베스트서울(서울투자청) 운영	- 투자유치 정보제공 - 마케팅 기능 강화 - 직접투자유치 기능 강화	2022.2.~ 2025.11.12.
재단법인 운영	- 산업별 투자유치 전문가 운영 -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킹 형성 - 서울시 외국인투자 관문 역할 - 글로벌 레벨 종합서비스 제공	2025.11.13. ~ 현재

- (재)서울투자진흥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면적은 기존 ‘인베스트서울’이 임대 사용중인 6층 590.20m²과 재단 설립에 따라 7층 공실부분 401.39m²를 신규로 추가 임대하는 것임
- 시설사용 허가기간은 사무실 조성과 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10월부터 2030년 9월까지 총 5년이며 무상사용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9월까지 4년 9개월로 재단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임

다. 동의안의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

- 이번 동의안은 기존 서울글로벌센터빌딩(공공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인베스트서울’이 2025년 11월 서울시 출연 비영리 공공법인인 (재)서울투자진흥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 중인 공유재산 및 추가 면적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¹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¹¹⁾에 따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

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공공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안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 할 것임

- 서울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임에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 매년 출연금을 통해 사용료를 납부한 사례가 일부 있으나 공유재산 사용료 증가에 따른 출연금 증액 등 불필요한 세입 및 세출의 발생과 국세(부가가치세) 지출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조세지출 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공공재산 사용료 감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비영리 공공법인인 (재)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사용하는 서울글로벌센터 빌딩(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1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사용료의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이하 생략)

- (재)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 판결을 받고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또한, (재)서울투자진흥재단의 정식 업무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의 사용허가 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관련 행정절차 및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국세지출 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불임1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입주 현황

('25.10월말 기준, 단위 : ㎡)

위치	입주기관	공급면적(전용면적)	최초계약	비 고(계약기간 등)	관련부처(부서)
15층	아시아현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749.54(433.23)	2017. 3.	2022. 03. 02. ~ 2027. 03. 01.(5년)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
14층	스페인대사관 경제 상무부	475.66(251.99)	2013. 5.	2025. 05. 25. ~ 2028. 05. 24. (3년)	-
	이클레이(ICLEI) 동아시아 본부	273.88(145.09)	2013. 8.	2023. 02. 01. ~ 2026. 01. 31.(3년)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13층	서울국제개발협력단	267.37(139.10)	2016. 3.	2025. 01. 01. ~ 2026. 12. 31.(2년)	-
	공실('22.7월~현재)	203.26(105.74)	-	세계은행 입주 추진(입주시기 미정)	-
12층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	278.91(145.09)	2018. 4.	2023. 04. 21. ~ 2026. 04. 20.(3년)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은행그룹(IFC,MIGA) 서울연락사무소	431.89(228.8)	2017. 2.	2022. 02. 17. ~ 2027. 02. 16.(5년)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
11층	유엔여성기구(UN Women) 지식·파트너십센터	317.65(168.28)	2022. 8	2022. 08. 1. ~ 2027. 07.31.(5년)	여성가족부
	세계보건기구(WHO) 아·태 환경보건센터	748.68(433.24)	2019.10.	2024. 10. 10. ~ 2028. 12. 31.(4년)	환경부,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시티넷(CITYNET)	420.80(223.45)	2014. 2.	2023. 02. 24. ~ 2026. 02. 23. (3년)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
10층	공실('18.6월~현재)	131.25(69.70)	-	ADB 입주 추진('26.상반기)	-
	공실('17.2월~현재)	195.76(103.95)	-	ADB 입주 추진('26.상반기)	-
9층	국제회의장	746.68(433.25)	-	-	-
8층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235.87(124.37)	2015.10.	2025. 10. 01. ~ 2030. 09. 30.(5년)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협력연락사무소	265.40(139.94)	2019. 5.	2024. 05. 13. ~ 2029. 05. 12.(5년)	농림축산식품부
	유엔아동기금(UNICEF) 서울사무소	242.02(127.61)	2017. 1.	2022. 01. 05. ~ 2027. 01. 04.(5년)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
7층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340.52(179.43)	2014. 1.	2020. 02. 04. ~ 2026. 02. 03.(3년)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공실('20.5월~현재)	401.39(211.50)	-	서울투자진흥재단 입주 예정('26.상반기)	-
6층	서울시설공단	151.47(77.52)	2013. 1.	-	-
	인베스트서울센터(서울산업진흥원)	590.20(302.06)	2013. 3.	금융투자과 수탁기관 2025 01.01. ~ 2025 10.31.(10월)	서울시 금융투자과
5층	서울글로벌센터	738.45(426.46)	2013. 3.	외국인이민담당관 수탁기관	서울시
		686.84(395.15)	2013. 3.	2025 04.01. ~ 2027.12.31.(2년)	외국인이민담당관
3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635.88(358.16)	2013. 5.	2025. 02. 01. ~ 2026. 01. 31.(1년)	-
		620.90(355.95)	-	-	-
2층	우리은행	33.53(19.22)	2015. 6.	2024. 02. 01. ~ 2027. 01. 31.(3년)	-
	지겟 유한회사	16.83(9.65)	2021. 1.	2024. 01. 06. ~ 2029. 01. 05.(5년)	-

※ 입주율 91.2%, 입주기관 총 19개 기관 (국제기구 11개, 외국인 지원기관 및 기타 8개)

※ '25년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입주 국제기구 11개 중 서울시 지원 8개, 미지원 3개

- ①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국가인권위원회 지원 ②유엔식량농업기구(FAO) 협력연락사무소-농림축산식품부 지원
- ③유엔여성기구(UN Women)성평등센터-여성가족부 지원

※ 공실 연간 임대료(부가세 미포함)

- 13층 2호 : 약 65,049천원 / 10층 3호 : 약 62,877천원 / 10층 2호 : 약 42,157천원 / 7층 2호 : 약 128,746천원

붙임2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사용허가 요청 내역

○ 사무실 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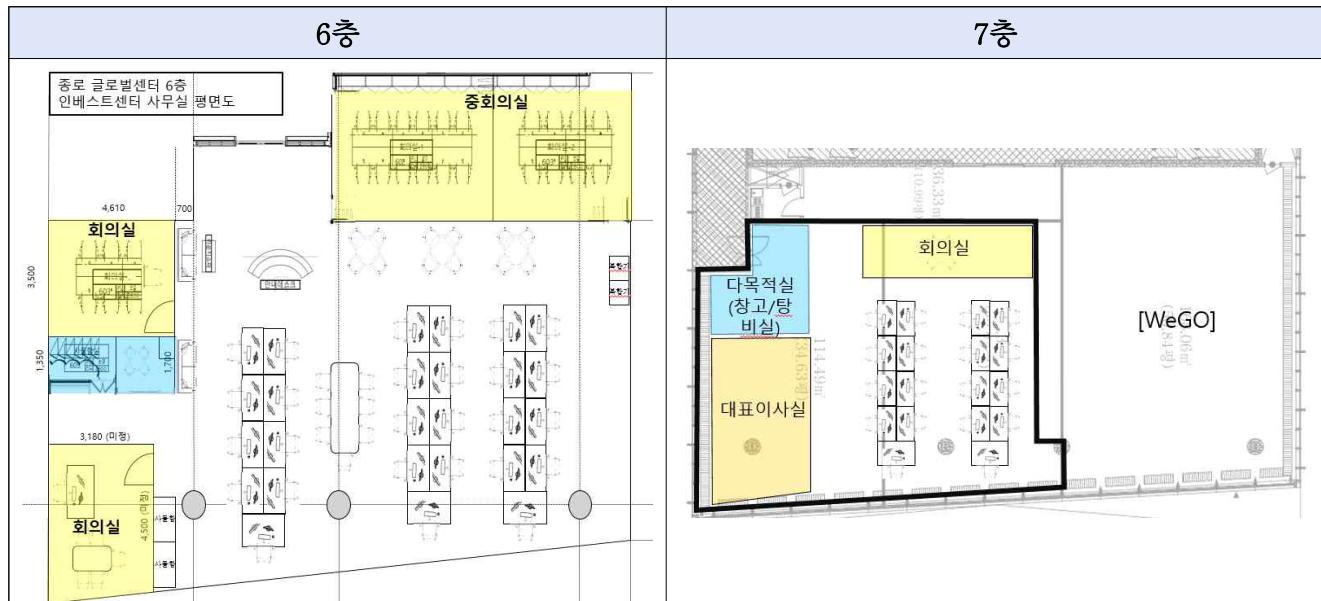
구분	임대면적 (전용면적)	비고
6층*	590.20m ² (302.06m ²)	인베스트서울-계속
7층	401.39m ² (211.50m ²)	재단-신규

* 현재, 서울시 대행사업 수행중으로 사용료 면제, 관리비 납부 중

○ 공간 활용계획

구분	용도별 개수 및 사용 면적(전용기준)		비고
	종로 6층	종로 7층	
대표이사실	—	1개 30m ²	현 센 터 장 (14m ²)
중회의실	1개 49.5m ²	—	—
소회의실	2개 30.4m ²	1개 20m ²	
사무실	3개팀 214.36m ²	2개팀 146.5m ²	IFC 1개소
탕비실/창고	1개 7.8m ²	1개 15m ²	
면적합계(전용)	590.20m ² (302.06m ²)	401.39m ² (211.50m ²)	

○ 공간배치 계획(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3350
------------	------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건물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현황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서린동, 영풍문고 옆)
- 면적: 대지면적 $1,070 m^2$, 연면적 $11,752 m^2$
- 목적: 국제기구 활동 지원
- 규모: 지하 4층, 지상 15층
- 재산관리관: 외국인이민담당관(건물), 주차계획과(토지)

나. (서울투자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 현황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서울글로벌센터빌딩 6·7층)
- 면적: 토지 $90.34 m^2$, 건물 $991.59 m^2$
- 목적: (재)서울투자진흥재단(市출연기관) 비영리 목적사업 수행(사무공간)
- 당사자: <허가부서> 외국인이민담당관 / <수허가자> (재)서울투자진흥재단
- 허가기간: 2025. 10월 ~ 2030. 9월(5년)
- 무상사용기간: 2026. 1월 ~ 2030. 9월(4년 9개월)

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 출연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호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 요건에 해당됨.
-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국제 기구” 중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재단의 공공성 및 정책적 필요성 고려시, 사용료 감면 타당

※ ‘2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 의견을 득함.

- 심의일: ‘25. 9. 25.(목)
-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재산관리과, ’25.10.1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출자·출연기관 등이 비영리사업을 할 때 지방 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기 바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호의2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이재상 (☎ 2133-5078)